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87
----------	-------

발의연월일 : 2023. 4. 27.

발의자 : 위성곤 · 양정숙 · 홍정민
최종윤 · 백혜련 · 안규백
김남국 · 윤준병 · 허영
이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획강도가 높은 어업 등에 대해 어업자단체 등이 지정 신청 기간에 감척 대상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연근해 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연근해어업의 경우 어업이익이 현저히 낮아 사실상 어업을 유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수 대비 허가 건수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직권 감척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에 어획강도와 어업생산량이 낮아도 어업이익이 현저히 감소하여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직권으로 감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0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때에는”을 “때 또는 어업이익이 현저히 감소하여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업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